

학생복지시설운영에관한규정

2019.05.29.제정

<학생·장학봉사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생복지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교직원과 복지시설 사용자(학생)에게 적용된다.

제3조(복지시설의 종류) 학생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은 편의(지원)시설과 체육시설로 구분하며, 세부 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편의(지원)시설

1. 학생식당
2. 강당
3. 학생자치기구사무실 및 동아리실
4. 학생휴게실
5. 편의시설[소비조합에 속한 입점업체]
6. 보건실

② 체육시설

1. 체력단련실(헬스장, 당구장)
2. 운동장
3. 농구장
4. 풋살장
5. 동명스타디움

제4조(시설 운영 기본방향) 시설 운영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은 학생들의 취미활동 또는 단체적인 교과외 활동의 중심지로 한다.
2. 시설의 혜택이 전교생에게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한다.
3. 시설이 학생 또는 학생 상호간의 대화의 장소로서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터전이 되게 한다.
4.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불편 및 개선사항은 [별표1]의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토록 한다.
5. 이 규정이 정하지 않는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 회의에 의해 결정토록 한다.

제5조(근로학생) 학생처장은 학생들의 시설 이용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고, 이용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시설에 근로학생을 배치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학생복지시설의 신설 및 용도변경) 시설의 신설 및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사용시간) 시설의 사용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학생들의 이용을 원활하게 한다.

제8조(복지시설의 사용신청 및 승인) ① 편의(지원)시설 중 강당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설물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체육시설을 이용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물 관리 규정」, 「동명스타디움운영규정」에 따른다.

제9조(점검) ① 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요인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한다.

②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자료로 이용하며, 관련부서 및 위원회 개선요청하여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적극반영토록 한다.

③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위생점검을 연4회 이상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토록 한다.

④ 시설물 안전점검은 시설물관리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학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세칙」은 폐지한다.

[별표1] 학생복지시설 신설, 운영 및 용도변경을 위한 관련 규정

시설명	관련규정 준용
교직원 및 학생식당	소비조합운영위원회규정
강당	시설물관리규정
학생자치기구사무실 및 동아리실	학생회관관리운영내규
학생휴게실	시설물관리규정
편의시설[소비조합에 속한 입점업체]	소비조합운영위원회규정
보건실	시설물관리규정
체력단련실(헬스장, 당구장)	시설물관리규정
운동장	체육시설물관리규정
농구장	체육시설물관리규정
풋살장	체육시설물 관리규정
동명스타디움	동명스타디움운영규정